

# 업무협력기관 협약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상호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어 공동협력하기로 한다.

##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참여 기관이 자유학기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 교육에 활용되는 자유학기제를 발전·확산시키는데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업무협력 분야)

참여 기관은 본 협약서에 따라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되, 각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 및 확대를 위한 연구 및 사업의 협력적 추진
2. 참여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자유학기제 관련 다양한 사항에 대한 논의
3. 자유학기제 학생 체험 인프라 구축
4. 자유학기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강사 인력 확보 공동 노력
5. 참여 기관의 연구 인력 상호 교류 및 연구 인프라 활용 지원
6. 기타 각 기관이 호혜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사항

## 제3조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참여 기관은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기관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협의회의 개최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제4조 (비밀유지)

본 협약서와 관련된 협력 및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참여 기관의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5조 (효력발생)

본 협약서는 참여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발효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또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협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된다.

## 제6조 (협약서의 해지)

협약기관은 대내외적으로 본 협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013년 6월 4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정택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강혜련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백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태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재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박영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재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안재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홍상표